

1. 개정이유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고,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한편, 재산세 물납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 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확인서 개정 및 납세담보 면제확인서 신설
(안 제32조, 안 별지 제32호, 제32호의2, 제33호, 제33호의2서식)
- 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48조의4, 안 별지 제43호의2서식, 안 별지 제43호의13서식, 안 별지 44호의2서식)
- 다. 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안 제6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5.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납세담보확인서의”를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로,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을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를 “다음 각 목에”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

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

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60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만, 같은 호 나목의 경우 판

결이 확정된 날

별지 제32호서식 및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및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㉑중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를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서식명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를 “주민세 종업원분([]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13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뒤쪽 및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뒤쪽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란의 “60%”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확인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명
주소(영업소)
전 화 번 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납 담 보 현 세 황

납세담보총액
①

미납부 산출세액 ②
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세보증 신청액
③

과 부 족
①-(②+③)

납세담보제공확인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증권번호(B/L)

구분

품명

품목분류
(HS부호)

규격

수량

수량단위

판매가격

담배소비세
세율 세액

지방교육세
세율 세액

총반출

계

과세대상
담배 반출

계

미납세 반출
(과세면제)

계

「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담세담보제공확인서번호)										처리기간	
세무과-12345(일련번호로 같음)										즉 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영업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주 소						
담 보 종 류		현금 ☐ , 지급보증서 ☐ , 기타()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제공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통관세관명							증권번호(B/L)				
구분	품명	품목분류 (HS부호)	규격	수량	수량단위	판매가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율	세액	세율	세액	
계											
과세 (빈란)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 (예:Caos 6mg외70종)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									
과세면제 (빈란)											
본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제공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영 업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 면 세 제 담 요 보 건	확 인 내 용			해 당 사 실					
	최근 3년간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실적 있음 []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납세담보 면제 확인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 분	품 명	품목분류 (HS부호)	규 격	수 량	담 배 소 비 세		지 방 교 육 세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총 반 출	계								
과 세 대 상 담 배 반 출	계								
미 납 세 반 출 (과 세 면 제)	계								
「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없 음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처리기간	
세무과-12345(일련번호로 같음)										즉 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통관세관명											
납세담보 면제요건 확인결과				납세담보 면제 해당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세담보면제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구분	품명	품목분류 (HS부호)	규격	수량	수량 단위	판매 가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율	세액	세율	세액	
계											
과세 (빈란)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예:Caos 6mg외70종)	품목이 많을 경우, 별첨									
과세 면제 (빈란)											
본 납세담보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담배소비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 곤란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을 다시 요구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	---	---

1. 과세표준계산	108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109	이월 결 손 금				
	110	비 과 세 소 득				
	111	소 득 공 제				
	112	법 인 세 과 세 표 준 (108 - 109 - 110 - 111)				
	159	선 박 표 준 이 익				
	105	외 국 법 인 세 액 조 정 액				

2. 산출세액계산	113	법인세과세표준 (112 + 159 + 116)				
	106	과세표준 차감액				
	107	과세표준(113 - 106)				
	114	세율				
	115	산출세액				
	116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1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11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19	합계(115 + 118)					

3. 납부할세액계산	120	산출세액(120 = 119)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22	차감세액					
	123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24	가산세액					
	125	가감계(120 - 121 - 123 + 124)					
	기납부세액	126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127	수시부과세액				
		128	특별징수납부세액				
		129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130	소계 (126 + 127 + 128 + 129)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132	합계(130+131)					
	133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134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135	차감납부할세액 (125 - 132 ± 133 + 134)						

4.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137 과 세 표 준						
	138 세 율						
	139 산 출 세 액						
	140 감 면 세 액						
	141 차 감 세 액 (139 - 140)						
	142 공 제 세 액						
	14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144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145 가 감 계(139 + 143 + 144)						
	기 납 부 세 액	146 수시부과세액					
147 () 세 액							
148 계 (146 + 147)							
149 차감납부할세액 (145 - 148)							

5. 미환류소득법인지방소득세	150	미 환 류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151	세 율				
	152	산 출 세 액				
	153	가 산 세 액				
	154	기 납 부 세 액				
	155	이 자 상 당 액				
	156	차감납부할세액 (152 + 153 - 154 + 155)				

6. 세액계	157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계 (130 + 149 + 156)					
	158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159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157 - 124 - 134 - 144 - 153 + 131 + 133)					
	160	분납할 세액					
	161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 (159 + 160 - 158)					

작성 방법

1. 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㉓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㉒ 선택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㉑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㉑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 과세표준 차감액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㉑금액을 적습니다.
5. 세율란(㉑, ㉒, ㉓):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㉒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㉒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㉒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㉒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㉒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㉒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㉒ 탄력세율조정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㉒ 가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가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㉑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㉒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㉒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3. 가산세액(㉒, ㉒, ㉒)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계(㉒, ㉒, ㉒)란: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㉒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㉒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㉒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㉒ 분납할 세액란: ㉒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사 연 도	·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③ 차감한도(①+②)	

(단위: 원)

구 분	외국법인세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	합계 금액
④ 이월된 차감액			
⑤ 당기 발생 차감액			
⑥ 당기 차감 대상액(④+⑤)			

(단위: 원)

구 분	외국법인세액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	합계 금액
⑦ 당기 실제 차감액(⑦≤③)			
⑧ 이월배제액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⑥-⑦-⑧)			

[illegible]

첨부서류	<외국법인세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작성 방법

1.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3. ③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며,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이월된 차감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이월 금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의 이월된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 당기 발생 차감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발생하여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당기 차감 대상액란: ④ 이월된 차감액과 ⑤ 당기 차감 발생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실제 차감액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 대상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이월배제액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란: ⑥ 당기 차감 대상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④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11. ⑩ 사업연도란과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등 발생액란: ⑩ 사업연도란에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 외국 법인세액공제 금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등 발생액란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2.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3.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란: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등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
14.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과 세표준 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 연결 이월결손금				
		④ 비과세소득				
		⑤ 소득공제액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②-③-④-⑤)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⑧ 과세표준 차감액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⑥+⑦-⑧)				
	연결산 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 산	⑩ 세율				
		⑪ 연결산출세액				
		⑫ 연결세율(⑩÷⑨)				
		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㉞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㉟ 조정 연결산출세액				
		㊱ 결손금 조정세액				
		⑭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⑮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⑯ 가산세액				
		⑰ 가 감 계(⑬-⑭+⑮)				
		기납부세 액	기한내 납부	⑱ 중간예납세액		
				⑲ 특별징수납부세액		
				㉚ ()세액		
				㉛ 소 계(⑱+⑲+㉚)		
			㉜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㉝ 합 계(㉚+㉜)						
⑳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㉞ 차감 납부할 세액(⑰-㉝+㉞)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㉟ 양도 차익					
	㊱ 등기자산					
	㊲ 미등기자산					
	㉟ 비과세소득					
	㊱ 과세표준					
	㊱ 세율					
	㊱ 연결산출세액					
	㊱ 감면세액					
	㊱ 공제세액					
	㊱ 가산세액					
㊱ 가 감 계(㉟-㊱+㊱)						
㊱ 기납부세액						
㊱ 차감 납부할 세액(㊱-㊱)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㊱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㊱ 세율					
	㊱ 산출세액					
	㊱ 가산세액					
	㊱ 이자상당액					
㊱ 납부할 세액(㊱+㊱+㊱)						
세액계	㊱ 차감 납부할 세액 계(㉞+㊱+㊱)					
	㊱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㊱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㊱-㊱-㊱-㊱+㊱+㊱)					
	㊱ 분납할 세액					
	㊱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㊱+㊱-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②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과세표준 차감액란: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⑦금액을 적습니다.
5.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⑧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6. ⑪ 연결산출세액란: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⑫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같은 조 제8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8. ⑮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계란(㉓·㉔):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㉕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㉕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㉖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㉗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㉗ 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3. ㉙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4. ㉚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㉚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㉛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㉛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6. ㉜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 1)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 2)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3)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합니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4)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 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17. ㉝ 분납할 세액란: ㉝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u>납세담보확인서의</u>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u>납세담보확인서</u> 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u><신 설></u>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 ----- --- <u>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u> --- ----- ----- <u>납세담보제공</u> <u>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u> --- --.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u>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u>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u>납세담보면제확인서</u> 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⑤ (생략)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u>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u> 차감 명세서에 다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u>법인지방소득</u> <u>세 과세표준</u> -----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1. ~ 3. (현행과 같음)

⑦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

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생략)

3.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신설>

<신설>

<신설>

-----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
-----.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u>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제1항---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상 <u>가액·공매가액이 결정된 날</u>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 <u>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u>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매매 <u>계약일. 다만, 같은 호 나목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u>
--	--